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89
----------	-------

발의연월일 : 2025. 6. 26.

발 의 자 : 박정현·양부남·이해식
박용갑·황명선·임미애
서미화·이연희·이재정
위성곤·이광희·이학영
박홍배·김동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는 모든 어린이가 적합한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장애어린이가 다른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장애아동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장애아동이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본 법률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어린이놀이기구”이란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

제8조제1항 중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을 “대상시설 및 어린이놀이기구에 설치하는”으로, “대상시설의”를 “대상시설 및 어린이놀이기구의”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지원) ① 어린이놀이기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장애인등이 어린이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기구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어린이놀이기구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9. “어린이놀이시설”이란 「 <u>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u> 」 <u>제2조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u> <u>을 말한다.</u>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u>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u> <u>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u> <u>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u> <u>령령으로 정한다.</u> ② (생 략) <u><신 설></u>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u>대상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에</u> <u>설치하는-----대상시설</u> <u>및 어린이놀이시설의-----</u> -----. ② (현행과 같음) <u>제13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설치</u> <u>지원) ① 어린이놀이시설의 소</u> <u>유자 또는 관리자(관리 의무자</u> <u>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u> <u>다)는 장애인등이 어린이놀이</u> <u>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u> <u>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u> <u>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u> <u>여야 한다.</u>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u>

<u>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어린이놀이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